

의안번호	제 309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월 일 (제 277 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9년 1월 5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
----------	-----

제출연월일 : 2009. 1. 5.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 4. 18.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삭제(안 제6조제1항제2호)

(1) 관계 법령 개정(2008.4.18.)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

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 산정 시 제한규정 삭제(안 제30조제3항제5호)

- (1) 주거용 건물의 기준에서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

다.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 감액하는 비율을 확대(안 제36조)

- (1) 전년도 사용료 및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경작용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괄 변경

라.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변경(안 제41조제3호)

-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변경

마.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 보완(안 제35조제1항)

바. 기타 인용법률 및 직제개정으로 보완

(안 제5조제1항제3호), (안 제6조제2항제2호), (안 제29조제2호), (안 제33조제2항), (안 제34조제1항제1호), (안 제34조제3항), (안 제41조제3호), (안 제47조).

사.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 (1)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외 2건(2008. 9.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등 변경)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나.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08.9.5.~2008.9.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
-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 허가
-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
- 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시·군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

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의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

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 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그 밖에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1절(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과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

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	---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

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
 -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제3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장 제2절(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채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

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제3절(제4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신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및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 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

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개정 규정에 따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산업정보평생과장"으로, "교육정보화과장, 기획관리과장"을 "학교정책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관"을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과"를 "산업정보평생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 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장 총 칙</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u> 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u>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본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p>	<p>1. "<u>본청"이란</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u>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u>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p>
<p>2. <u>제1관서</u> :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2. "<u>제1관서"란</u>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p>
<p>3. <u>교육청</u>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p>	<p>3. "<u>교육청"이란</u>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u>제34조에 따른</u>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p>	<p>4. "<u>제2관서</u>"란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5. "<u>관서의 장</u>"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u>해당</u>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u>해당</u>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③ 교육장은 <u>제2항에 따라</u> 위임 받은 사무 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u>해당</u>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p>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u>제2항과 제3항에 따른</u>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u>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u>을 지정할</p>

현행	개정안
<p>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위임사무) ①교육감이 <u>제3조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다음과 같다.</u></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u> 및 사용·수익허가나. <u>당해</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관리</u> 및 <u>대부</u></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p> <p>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u> 현물출자</p> <p>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와 사용·수익허가</u></p> <p>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p>	<p>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위임 사무) ① 교육감이 <u>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u>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와</u> 사용·수익허가</p> <p>나. <u>해당</u>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관리와</u> <u>대부</u></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p> <p>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u>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u>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u>따른</u> 현물출자</p> <p>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u>관리와 사용·수익허가</u></p> <p>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p>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p>

현행	개정안
<p>는 사무</p> <p>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p> <p>나.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 규정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운영지원과 세입관제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p>는 사무</p> <p>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p> <p>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와 대부(폐교재산의 대부는 제외)</p> <p>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과장(과장급 이상 담당관 포함)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현행	개정안
<p>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u>취득, 관리 및 처분</u>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는 위원으로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으로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 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u>기타</u>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제2항 및 제3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공유재</p>	<p>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u>없을</u>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u>취득·관리 및 처분</u>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는 위원으로 교육장과 각 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국장) 및 각 업무담당주사, 각 업무담당 장학사(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2. 심의회는 위원장으로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과 재산업무담당주사(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재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u>그 밖에</u>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u>제2항과 제3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업무) ① 공유재</p>

현행	개정안
<p>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u>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u>”의 <u>확정 사항</u></p> <p>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p> <p>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u>건축법</u>」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4. 다음 <u>각목의</u>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p>	<p>산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u><삭제></u></p> <p>2.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3. 잡종재산의 용도변경</p> <p>4. <u>그 밖의</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u>건축법</u>」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p> <p>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p> <p>4. 다음 <u>각목의</u>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p> <p>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p>

현행	개정안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

현행	개정안
<p>고 있는지의 여부</p> <p>5. 원상변경 여부</p> <p>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p> <p>7. <u>기타</u> 필요한 사항</p> <p>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u>각호의</u>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u>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u>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u>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u>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p>	<p>고 있는지의 여부</p> <p>5. 원상변경 여부</p> <p>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p> <p>7.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p> <p>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u>각 호의</u>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u>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u>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u>주거환경개선사업과</u> 주택재개발사업 <u>구역 내의</u>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p>

현행	개정안
<p>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u>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u>사용료와</u>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p>
<p>제 2 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연도</u>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u>얻어</u>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u>얻어야</u> 한다.</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u>제7조에 따른</u>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u>다음 연도</u>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u>받아</u>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u>받아야</u> 한다.</p>
<p>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의하지</u>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의하지</u>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따르지</u>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u>따르지</u> 아니하고 다른 <u>법령에 따</u></p>

현행	개정안
<p>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p>	<p>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라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p>

현행	개정안
<p>실제 사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 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책임 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당해</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목적 	<p>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19조(관리 및 처분) <u>재산관리공무원</u>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u>해당</u>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u>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목적

현행	개정안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u>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u>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u>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u>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p> <p>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 또는 단체</u>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거</u>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조에서</u>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u>국가</u></p>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p> <p>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u>개인이나</u>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u>이 조에서</u>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 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u>국가</u></p>

현행	개정안
<p>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⑦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 	<p><u>인증시험기관</u>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⑥ <u>제2항에도</u> 불구하고 다음 <u>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각급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u>그 밖에</u>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⑦ <u>이미</u>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u>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

현행	개정안
<p>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p> <p>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p> <p>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p> <p>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u>이조에서</u>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p>1. 사용자가 <u>고의 또는</u>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u>변상 또는</u>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p> <p>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u>사고 또는</u>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u>제27조제1항의</u> 규정 <u>에 의하여</u>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p>	<p>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p> <p>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p> <p>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p> <p>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u>이 조에서</u>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p>1. 사용자가 <u>고의나</u>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u>변상하거나</u>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p> <p>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u>사고나</u>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p> <p>제24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 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u>제27조제1항에 따라</u>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p>

현행	개정안
<p>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p>	<p>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과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p>

현행	개정안
<p>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p> <p>제25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 장 잡종재산</p> <p>제 1 절 대 부</p>	<p>제4장 잡종재산</p> <p>제1절 대부</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중의</u>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6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u>대부기간 중의</u>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 및 기타</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와 그 밖의</u>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당해</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제28조의</u>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u>각호의</u> 어느 하</p>	<p>② <u>국가기관이나</u>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u>해당</u>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p> <p>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u>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u>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u>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u>따른</u>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u>외국인 투자기업 등</u>”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u>각 호의</u> 어느 하나와</p>

현행	개정안
<p>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p>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p>

현행	개정안
<p>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p>②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40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p>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p>	<p>③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25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u>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u>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u>

현행	개정안
<p><u>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u>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u>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u></p> <p>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이상으로</u> 할 수 있다.</p> <p>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u>연</u>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p><u>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u>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 이상으로</u> 할 수 있다.</p> <p>④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u>10 이상으로</u>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u>따라</u> 도가 설립·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u>따라</u>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u>따라</u>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p>	<p>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p> <p>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p> <p>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의 요율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나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p>

현행	개정안
<p>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원석시가가란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p>	<p>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3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p>

현행	개정안
<p>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p>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건축법</u>」 <u>제55조</u>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u>해당</u>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u>각 호</u>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현행	개정안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p> <p>④제3항의 <u>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재산관리관이 대부분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u>의한</u>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분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분료 또는 사용료</u>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다음 <u>각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p> <p>④ 제3항의 <u>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건물과</u> 부지의 대부분적은 대부분을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p> <p>⑤ 재산관리관이 대부분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u>다른</u>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분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u>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u>대부하거나</u>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u>대부료나</u>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u>각 호와</u> 같다.</p> <p>1. 다음 <u>각 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제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u> 사업</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u>각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p>	<p>가. 「외국인투자촉진법」 <u>제9조에 따라</u>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p> <p>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p>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u> 사업</p> <p>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p>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2. 다음 <u>각 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p>

현행	개정안
<p>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u>200명 이상</u> 3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3. 다음 <u>각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p>	<p>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 평균 고용 인원이 <u>200명 이상</u> 3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공장을 증설 하는 경우</p> <p>3. 다음 <u>각 목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p>

현행	개정안
<p>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u>제3조의2의</u>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500</p> <p>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300</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u>규정에</u>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p>	<p>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p> <p>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p> <p>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u>따라</u>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p> <p>사. <u>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u>제3조의2에 따른</u>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p> <p>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p> <p>③ 「<u>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u>따라</u>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p> <p>2. <u>기타</u> 공공기관 : 100분의 50</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신설></p> <p>①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u>요청</u> 또는 귀책</p>	<p>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p> <p>2. <u>그 밖의</u> 공공기관: 100분의 50</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p>② 전세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u>요청</u>이나 귀책사</p>

현행	개정안
<p>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지목 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u></p> <p>2. <u>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u></p> <p>3. <u>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u></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u>사용료나 대부료보다</u>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u>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u></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p>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u>제30조에 따른</u> 공유재산의 <u>대부료나</u>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u>1년 미만인</u>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p>

현행	개정안
<p>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u>기타</u>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절 매 각</p>	<p>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u>제1항에도</u> 불구하고 천재·지변 <u>그 밖의</u>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u>각 호</u>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u>연월일</u>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매각</p>

현행	개정안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u>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u>공영주택</u>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p>	<p>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u>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p>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u>공영주택</u>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p>

현 행	개 정 안
<p>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 	<p>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현 행	개 정 안
<p>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u>당해</u>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영 <u>제39조제2항제5호의</u>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영 <u>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u>제38조제1항제23호에</u> 의한 수의 계약에 <u>의하는</u>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삭제)</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u>2분의 1이상</u>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p>	<p>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u>해당</u>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④ 영 <u>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u>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영 <u>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u>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u> 수의 계약에 <u>따르는</u>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u>내용과</u>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삭 제></p> <p>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인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p>

현행	개정안
<p>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u>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u>한하여</u>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p>	<p>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u>그 밖의 지역에서는</u>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u>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u>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u>한정하여</u>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5. 지방자치단체와 <u>당해</u>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4. 지방자치단체와 <u>해당</u>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절 신탁</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u>제48조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신탁</p>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u>제48조제1항에 따라</u>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공유임야 관리</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한하여</u> 처분 하되 <u>경제성 및</u>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공유임야 관리</p> <p>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한정하여</u> 처분 하되 <u>경제성과</u>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청사관리</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u>위치·규모 재원확보</u>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u>의하여</u> 신축의 <u>타당성 여부를</u>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u>감안하여</u> 「건축법」상의 <u>건폐율이상으로</u>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u>의하되</u> 다음 <u>각호에</u>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u>증·감등</u> 장래수요를 <u>감안한</u>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u>충무시설</u>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청사관리</p> <p>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u>위치·규모 및 재원확보</u>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u>따라</u> 신축의 <u>타당성을</u>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른</u>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p> <p>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u>고려하여</u> 「<u>건축법</u>」 <u>제55조의 건폐율 이상으로</u> 할 수 있다.</p> <p>제48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u>따르되</u> 다음 <u>각 호에</u>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u>증·감 등</u> 장래수요를 <u>고려한</u>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u>충무시설과</u>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현행	개정안
<p>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p> <p>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p> <p>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p> <p>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p>	<p>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p> <p>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p> <p>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p> <p>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관사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관사관리</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u>관사</u>”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u>기타</u>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u>관사</u>”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u>그 밖에</u>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급 관사</u> : 교육감 관사 2. <u>2급 관사</u>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u>3급 관사</u>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u>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u> 2. <u>“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u> 3. <u>“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u>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의하여</u>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u>따라 해당</u>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p>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p>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p>

현행	개정안
<p>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u> 2. 비품의 <u>망실 및 훼손방지</u>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u>시설 또는 기구</u>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u>당해</u>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u>제52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u>기타</u>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u>각 호</u>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p>	<p>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산과</u>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u>망실과</u>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u>시설이나</u>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p>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u>해당</u>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u>제52조에 따른</u>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u>그 밖에</u>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p>

현행	개정안
<p>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u>,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p> <p>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p> <p>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u>한함</u>)</p>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u>제50조의 규정</u>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제57조(비품의 관리) <u>법 제52조의 규정</u>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u>제55조의 규정</u>에 의하여</p>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u>공작물과</u>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u>한정함</u>)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u>제50조에 따른</u>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p>제57조(비품의 관리) <u>법 제52조에 따른</u>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u>제55조에 따라</u> 예산에서 구입</p>

현행	개정안
<p>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4조의 규정에 따라</u>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u>당해</u>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u>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u>운영비</u>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u>사용자</u>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사의 <u>시설장비</u>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u>기타</u> 필요한 사항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u>망실</u>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u>제49조 내지 제59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8조(인계 인수 등) ① <u>제54조에 따라</u>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u>해당</u>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u>운영비</u>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u>사용자나</u>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사의 <u>시설장비와</u>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u>그 밖의</u> 필요한 사항 <p>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u>망실하거나</u>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u>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8 장 보 칙</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u>제81조제1</u></p>	<p>제8장 보칙</p> <p>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u>제81조제1</u></p>

현행	개정안
<p><u>항의</u>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당해</u> 점유자에게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u>제81조 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u>각호와</u>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u>이상</u>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u>이상</u>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u>이상</u> : 2년 분납 4. 300만원 <u>이상</u> : 3년 분납 <p>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u>제81조 제1항의</u>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이</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u>제84조제2항에</u>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u>각목의</u>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 	<p><u>항에 따른</u>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u>해당</u> 점유자에게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u>제81조제1항에 따라</u>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u>각 호와</u>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0만원 <u>이상</u>: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u>이상</u>: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u>이상</u>: 2년 분납 4. 300만원 <u>이상</u>: 3년 분납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u>제81조 제1항에 따라</u>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u>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u>제84조제2항에 따른</u>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u>다음 각 호와</u>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u>각 목의</u>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

현행	개정안
<p>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p> <p>가. 관인을 <u>도용</u>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p> <p>나. <u>기타</u>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기타재산을</u>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 된다</u>.</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p>	<p>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p> <p>가. 관인을 <u>도용하거나</u>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p> <p>나. <u>그 밖</u>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u>그 밖의 재산</u>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u>2명</u>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제64조(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p>

현행	개정안
<p>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u>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당해</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 의하여</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u>형상</u>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의한</u>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u>토지나</u>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u>해당</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u>소유지분에 따라</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해당</u> 토지의 <u>형상과</u>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당</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u>따른</u>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별 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현 재						개 정 안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사지역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보통교실	5,000원	10,000원	15,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사 용	25,000원	50,000원	100,000원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군지역 (사지역 의 읍·면 포함)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보통교실	2,500원	5,000원	10,000원	1실 당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체육관 (강당)	일시 사용	15,000원	30,000원	60,000원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3,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일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운동장	일시	15,000원	30,000원	60,000원
1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장수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있음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

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한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한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장 임대료를 고려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개정 1989.4.10, 1990.6.30, 1996.6.15, 2000.7.27, 2007.12.28>

1.~3. 생략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생략

□ 2008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기획재정부)

제7조(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의 매각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은 토지가 제1항제1호의 영세 규모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4.6]

□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3.21.>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